

[일련번호 : 1]

경 기 도 체 육 회 시 정 요 구

[제 목] 각종위원회 운영 부적정

[소 속 기 관] 경기도검도회

[내 용]

경기도검도회(이하 ‘검도회’라 한다)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「경기도검도회 규정」¹⁾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.

검도회 「규정」 제37조 제1항²⁾에 따르면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·경기력향상·선수·심판·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, 제2항에는 제1항 이외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.

그리고 「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」³⁾ 제4조 제3항⁴⁾ 및 제6조 제1항⁵⁾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, 위원의 임기는 *년으로 하고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1) ****.***. 제정 / ****.***. 개정 / ****.***. 개정 / ****.***. 개정

2) 제37조(각종위원회의 설치) ①도검도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, 경기력향상위원회, 선수위원회, 심판위원회,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.
②도검도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3) ****.***. 제정

4) 제4조(구성) ③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.

1. 판사,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*년 이상 종사한 사람

2. 스포츠 또는 법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*년 이상 근무한 사람

3. 스포츠 분야에서 **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5) 제6조(임기)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*년으로 하되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
그런데 검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****년 *월 **일에 위촉되어 *년 임기만료 후 현재까지(****년 *월) 아무런 행정절차 없이 운영되고 있다.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제3조(기능)과 운영위원회 제3조(기능)을 보면 위원회 기능 중 중복된 사항이 있다. 중복된 기능은 「표1」과 같다.

[표1] 경기도검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기능

구분	스포츠공정위원회	운영위원회	비고
제3조(기능)	1. 본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. 본회의 제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1. 위원회 및 시·군·종목단체의 제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1. 체육계 표창에 관한 사항 1. 체육상 추천에 관한 사항 1. 정부 및 경기도,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1. 본회, 회원단체의 임직원 및 위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·선수·체육동호인·심판의 징계에 관한 사항 1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	1. 본회 사업의 기본방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. 분쟁에 대한 사전 중재 및 조정 1. 우수선수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1. 대표선수 선발 및 규약, 훈련에 관한 사항 1. 체육장학생 및 우수지도자 선발에 관한 사항 1. 승단심사 업무의 기본방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. 교육 및 강습회 업무의 기본방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. 각종 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1. 기타 검도 전반에 관한 사항	

또한 「생활체육위원회 규정」⁶⁾은 ****년 *월 **일에 제정 및 위원회 구성이 되었으나 ****년 *월 **일에 해체되었다. 현재까지(****년 *월)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아 생활체육의 기본방침 및 진흥 등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이 정체되어 있다.

6) ****.***. 제정

[조치할 사항] 경기도검도회장은

- ① 임기가 지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을 재위촉 또는 새로 구성(위촉)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②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조(기능)와 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(기능) 중 체육계 표창, 체육상 추천, 포상,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운영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운영하고, 중복된 조항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.
- ③ 생활체육위원회 규정의 목적과 기능에 따른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생활체육 검도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

[일련번호 : 2]

경 기 도 체 육 회 개 선 요 구

[제 목] 회계규정 제정 및 회계처리 절차 개선

[소 속 기 관] 경기도검도회

[내 용]

경기도검도회(이하 ‘검도회’라 한다)는 경기도민에게 검도를 널리 보급하고 건전한 여가선용과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는 단체로서, 경기도 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어 경기도체육회의 「경기도종목단체 규정」⁷⁾ 및 「회계규정」⁸⁾을 준용하여 운영해야 한다.

검도회는 본회 「회계규정」 제14조(예산편성 지침)⁹⁾에 따라 계정별·사업별로 구분하여 예산을 세우고, 「경기도종목단체 규정」 제46조(예산 편성 및 결산)¹⁰⁾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하지만 검도회는 별도의 회계규정 없이 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였으며, 예산이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아 [표1]과 같이 결산액이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다.

7)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53조(규정 제·개정 등) ① 도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·개정하여야 한다.

8)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47조(회계감사 등) ② 도종목단체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,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회 규약 및 「회계규정」을 준용하여 도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.

9) 회계규정 제14조(예산편성 지침) 예산은 다음의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.

1.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이 정하는 사항

2.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

3. 자체예산 편성시 세입예산은 그 내용을 계정별 사업별로 관·항으로 구분하되 과목의 설정, 변경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.

10)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46조(예산 편성 및 결산) ① 도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[표1] 경기도검도회 예산/결산 현황(최근 3년)

(단위: 천원)

회계연도	예산액	결산액	비고(집행률)
****년	***,***	***,***	***%
****년	***,***	***,***	**%
****년	***,***	***,****	**%

예산 과목에 대한 구분은 [표2]와 같이 수입결산과 지출결산에서 서로 달랐고, 집행을 할 때에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일부사업에서 집행률이 100%를 상회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.

[표2] 경기도검도회 수입-지출결산 과목비교

예산과목	수입결산			지출결산			비고	
	관	항	목	관	항	목		
예산과목	사업수입	○○○	○○○	경상비	○○○	-		
			○○○		○○○○○	-		
		○○○○○	○○○		○○○	-		
		:	:		:			
	보조금	도비	○○○	○○○○○○○	대회비	국내대회		○○○○○
			○○○○○	○○○○○				○○○○○ ○○○
			:	:				:
		교육청	○○○○ ○○○	국제대회		○○○○		
		:	:					
	대한검도회	○○○○○	○○○○○	사업비	○○○	○○○○○		
		○○○	○○○		○○○○○○○			
		:	:		○○○	○○○○○		

사업비 통장은 구분없이 한 개만 사용하여 사업별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고, 일부 사업(도비보조금-○○○○○ ○○○ 등)에서는 관련 예산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사업비를 선 집행하기도 하였다.

예산을 지출할 때 필요한 원인행위가 부재하여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 등 지출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다수 있었으며, 지출은 지출결의서 없이 지출이 종료된 후 월별 지출보고서만 작성하였다.

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, 계좌이체를 한 경우에도 대부분 세금계산서는 발행받지 않았다. 사무운영 물품의 구입과 우편 발송료는 직원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지출을 하였는데, 회계연도가 종료된 영수증을 근거로 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.

[관계기관 의견]

경기도검도회는 예산안 변경 시 이사회 승인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, 사업별 예산의 수입-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업별로 통장을 개설하기로 하였다.

[조치할 사항] 경기도검도회장은

- ① 경기도체육회 「회계규정」을 준용하여 검도회의 수입-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회계규정을 제정하시기 바라며,
- ② 회계처리 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시기 바랍니다.

연번	내 용	근 거
1	· 사업계획 및 예산(안) 변경 시 이사회 승인 후 반영	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46조(예산 편성 및 결산)
2	· 명확한 예산과목 구분과 과목별 수입-지출 시스템 구축 - 예산과목별 통장 개설 등	회계규정 제14조(예산평성 지침)
3	· 회계처리 절차 개선 - 내부결재, 지출결의서 작성 - 지출원인행위서류 첨부(계약서, 견적서, 사진 등) - 지출방법 재고(단체명의 카드사용 원칙 등)	회계규정 제28조(지출원인 행위) 회계규정 제31조(지출의 절차) 회계규정 제32조(지출의 원칙)

[일련번호 : 3]

경 기 도 체 육 회 개 선 요 구

[제 목] 임원 급여성 경비지급 부적정

[소 속 기 관] 경기도검도회

[내 용]

경기도검도회(이하 ‘검도회’라 한다)는 경기도민에게 검도를 널리 보급하고 건전한 여가선용과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는 단체로서, 경기도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어 경기도체육회의 「경기도종목단체 규정」¹¹⁾ 을 준용해야 한다.

경기도체육회 「경기도종목단체 규정」 제24조의2(임원의 보수)¹²⁾에 따르면 경기도종목단체는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성 경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,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.

만약 경기도종목단체의 규정이 위 규정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동 규정 제54조(규정의 해석)¹³⁾에 의거하여 경기도체육회의 「경기도종목단체 규정」이 경기도종목단체의 규약(규정)에 우선하므로 검도회는 이를 반드시 준용해야 한다.

11)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53조(규정 제·개정 등) ① 도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·개정하여야 한다.

12) 제24조의2(임원의 보수)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에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.

13) 제54조(규정의 해석 등) ① 이 규정은 시·군체육회 규약(또는 기본규정)에 우선하며, 시·군체육회의 규약(또는 기본규정)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시·군체육회의 규약(또는 기본규정)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.

하지만 검토회는 자체규정에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[표1]과 같이 검토회의 이사 및 감사에게 〇〇〇, 〇〇〇〇 등을 매월 지급하고 있었다.

[표1] 경기도검도회 임원 수당지급 현황(최근 3년)

(단위: 천원)

회계연도	지급대상	지급액(년)	비 고
****년	〇〇〇〇	* * * * ,	
	〇〇〇〇	* * * * ,	
	〇〇〇〇〇〇〇	* * * * ,	
	〇〇〇〇	* * * * ,	
****년	〇〇〇〇	* * * * ,	
	〇〇〇〇	* * * * ,	
	〇〇〇〇	* * * * ,	
	〇〇〇〇	* * * * ,	
****년	〇〇〇〇	* * * * ,	
	〇〇〇〇	* * * * ,	
	〇〇〇〇	* * * * ,	
	〇〇〇〇	* * * * ,	

[조치할 사항] 경기도검도회장은

- ① 부적정하게 지급된 임원의 보수성 수당 체계를 조속히 개선하시고,
- ② 경기도체육회 「경기도종목단체 규정」을 준용하여 임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시기 바랍니다.